

제23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국가산업
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10 월 31 일

여 수 시 장 *mym* 

여수시 조례 제1985호

붙임 여수시 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
조례 1부

여수시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대책과 이전적지의 연관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의 범위)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범위는 정부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 이주대책에 한한다.

제3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4조(세입)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국고보조금(교부세 및 국비융자금 포함)
- 도비보조금
- 일반회계 전입금
- 차입금
- 입주업체 기탁금
- 산업용지 매각대금
- 이주택지 매각대금
- 기타수입

제5조(세출)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이주대책 보상비

2. 산업용지 조성비
3. 이주택지 매입 및 조성비
4. 이주대책사업 시행에 필요한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
5. 재특용자 상환
6. 차입금상환
7. 기타부대비
8.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
9.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

제6조(회계운영) 이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위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.

제7조(준용규정)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종전 조례(여수시 제 1253호)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이루어진 특별회계의 세입·세출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만료 및 폐지에도 불구하고 신설 조례에 따른다.

제3조 (종전 조례의 폐지) 여수시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253호(2016.12.30. 일부개정)는 폐지한다.